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인재(9급)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인재(9급)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학교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수습직원 2명

직군	직렬	직류	선발인원	임용예정부서
행정	교육행정	교육행정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부서)

2. 선발개요

- ①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대학의 장은 추천요건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추천
-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수습직원 선발
- ③ 최종합격자는 6개월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9급 지방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됨

3.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대학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 중에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

(2) 추천대상 자격요건

추천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되므로, 각 대학(의) 장은 추천 시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 졸업일로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최종시험(면접시험)일이 2026. 4. 17.인 경우 2023. 4. 17.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가능

- (졸업예정자) 추천일 현재 해당 대학에 재학중이어야 하며, 수습근무 시작 전 (2026년 하반기 예정)일까지 졸업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까지 졸업(학위취득)하지 못할 경우 합격 취소됨

②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

- 대학 입학 시부터 추천 시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둔 사람

③ 학과성적

-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학점의 4분의 3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자
- 다만, 각 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않음

④ 외국어능력

-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가 [붙임1]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기준표'의 기준 점수 이상인 자 (단,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는 외국어검정능력 시험점수가 없더라도 [붙임2] '국가기술자격증 기준표' 자격증을 소유한 경우 추천 가능)
-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는 인(적)성검사일 전일까지 성적이 유효(어학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하여야 함

- ※ 당해 검정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 TOEIC, TOEFL, TEPS, G-TELP, FLEX, OPIc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됨(단,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

⑤ 응시가능연령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18세 이상
(2008. 12. 31. 이전 출생자)

(3) 응시 결격사유 [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4) 추천방법

가. 대학별 자체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발

- 자체선발계획 공고,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추천대상자 선정 등

※ 추천 시 준수사항

- 추천대상자 선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 추천기준·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
-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다수의 기관으로 동시 추천 지양

나. 추천권자: 추천대학의 총장(학장)

다. 추천인원: 대학별 20명 이내

라.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학교에서 제출하는 추천서와 별도)

(5) 추천서 제출: 직접제출 또는 등기송부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가. 제출기간: 2026. 3. 9.(월) ~ 2026. 3. 13.(금) 09:00 ~ 18:00

- 각 대학에서는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송부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자(2026. 3. 13.(금)) 소인분까지만 접수함

(직접제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층 총무과 2사무실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 내에만 가능

(등기송부) 우(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연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2사무실 임용지원팀 채용담당자

* 등기우편 발송 후 채용담당자(☎064-710-0637)에게 등기송부사실 고지

나. 추천서 제출서류

구분	No.	제출서류	부수	유의사항
공통 사항	1	지역우수인재 수습직원 추천서 및 현황표	1부	○ [붙임3], [붙임3-1] 서식
	2	성적증명서	1부	○ 석차비율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	○ 유효기간 내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	1부	○ 외국어검정능력 시험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전문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

구분	No.	제출서류	부수	유의사항
	5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입증서류(재학·휴학증명서 등)
	6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 변동이력 포함
	7	기본증명서	1부	○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자
※ 주의사항		○ 상기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사본으로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원본을 요구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및 방법

(1) 시험일정

가. 추천서 제출 및 원서접수

학교 추천	원서접수(응시자 개별)	원서접수 취소
2026. 3. 9.(월) ~ 3. 13.(금)	2026. 3. 16.(월) ~ 3. 18.(수)	2026. 3. 16.(월) ~ 3. 19.(목)

나. 시험단계별 일정

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2026. 3. 24.(화)	2026. 3. 27.(금)
인(적)성검사	2026. 3. 27.(금)	2026. 4. 3.(금)	2026. 4. 10.(금)
면접시험	2026. 4. 10.(금)	2026. 4. 17.(금)	2026. 4. 24.(금)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함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je.go.kr> → 뉴스/소식→채용·시험정보→임용시험→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게시함
(합격 여부에 대하여 개별통지하지 않음)

(2) 시험단계

가. 서류전형

- 추천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결정

나. 인(적)성검사

- (검사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검사도구) 국내 인(적)성검사 시행기관에서 개발한 평가도구
- (검사문항 및 소요시간) 총 320문항 / 95분
 - 인성검사: 250문항(35분) ○ 직무능력(적성)검사: 70문항(60분)
- 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문답지는 검사 종료 후 회수
- 검사지의 평균점수를 바탕으로 설정된 하한점(불합격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해 면접시험 응시 가능: **인성검사 적격, 직무능력(적성)검사 40점 이상**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및 인(적)성검사 적격자에 한해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평정요소에 대해 상, 중, 하로 평정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면접시험 평정 성적을 산출하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라.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인(적)성검사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각 단계별 점수 반영 비율은 인(적)성검사 10%, 면접시험 90%로 함
-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최종합격자가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수습직원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수습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3. 16.(월) ~ 2026. 3. 18.(수) 09:00 ~ 18:00

-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자(2026. 3. 18.(수)) 소인분까지만 접수함

나. 접수방법: **직접제출 또는 등기송부**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직접제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층 총무과 2사무실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 내에만 가능

(등기송부) 우(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연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2사무실 임용지원팀 채용담당자

* 등기우편 발송 후 채용담당자(☎064-710-0637)에게 등기송부사실 고지

□ 제출서류

구분	No.	제출서류	부수	서류발급 및 제출 시 유의사항
공통사항 (필수)	1	응시원서 (응시수수료 동봉) - 5,000원 -	1부	○ [붙임4] 서식 (휴대전화, e-mail 주소 반드시 기재) - (방문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입증지(5,000원) 첨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실 판매 - (우편접수) 응시원서에 수수료(5,000원) 봉투 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2	자기소개서	1부	○ [붙임5]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 불가

-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수수료 면제(단, 응시원서 접수 시 면제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응시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송부
 -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학력 등)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6. 수습직원의 대우

-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고유의 업무를 부여받아 6개월간 수습근무를 수행한 후 수습근무성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 보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의거 임용 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 지급
 - ※ 수습근무기간을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수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

7. 기타 사항

-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임용지원팀(☎064-710-0637)으로 문의 바람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기준표 (제19조제3항제4호 관련)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8급	9급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60점 이상	PBT 53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83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픽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75점 이상	70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700점 이상 <또는 New TEPS 386점 이상>	625점 이상 (또는 New TEPS 340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77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오픽 (OPIc)	아메리카합중국 에이.시.티.에프.엘(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에서 시행하는 말하기 능력 시험(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을 말한다.	IM2 이상	IM1 이상

나. 기타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구분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8급	9급
중국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70점 이상	5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850점 이상	625점 이상
	한어수평고시 (신HSK)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HSK)를 말한다.	6급 180점 이상	5급 180점 이상
	오픽 (OPIc)	아메리카합중국 에이.시.티.에프.엘(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에서 시행하는 말하기 능력시험(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을 말한다.	IH 이상	IM2 이상
일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70점 이상	5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850점 이상	625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JPT)	일본순다이학원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840점 이상	64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N1 100점 이상	N2 100점 이상
	오픽 (OPIc)	아메리카합중국 에이.시.티.에프.엘(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에서 시행하는 말하기 능력시험(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을 말한다.	IH 이상	IM3 이상

비고 : 추천일 전일까지 위 표의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성적이 유효(어학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증 기준표 (제19조제3항제4호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 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p>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p>
시 설	일반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건축	<p>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교육행정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전산	전산	전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업	일반전기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보건	보건	보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료기술	인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선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인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선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인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선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3) 임상심리사2급(3)	인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인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환경	일반환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시설	건축	건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지역우수인재 수습직원 추천서

추천 학교	기본 사항	학 교 명			
		학교주소			
	담당자	성 명	연 락 처		
추천 대상	인적 사항	성 명	사 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핸드폰 :)		
		e-mail			
	전공, 성적	전공학과	(계열 :)		
		졸업여부	() 졸업, () 졸업예정		
			졸업(예정)일자		
		이수학점	필수졸업학점		
전공석차		석차비율			
외국어 성 적	시험종류	시험점수			
	시험일자				
<p>위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25조에 따라 지역인재선발채용을 위한 수습직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대학(교) 총장 (직인)</p> <p>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p>					

※ 참조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3.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작성방법>

1. 추천학교란에는 학교명, 학교의 소재지 및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한다.
2. 인적사항란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다.
3. 전공, 성적란에는 전공학과와 전공계열, 졸업여부, 졸업(예정)일자, 이수학점, 필수졸업학점, 전공석차, 석차비율을 기재한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으로, 졸업자의 경우 졸업에 표시하고 석차 비율란은 졸업자인 경우 소속 학과에서의 졸업석차 비율을, 졸업예정자인 경우 소속 학과에서의 석차 비율을 기재한다.
4. 외국어성적란 중 시험 종류에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명을, 점수는 당해 시험의 취득점수를, 실시일은 시험실시 연월일을 기재한다.

붙임3-1 지역우수인재 수습직원 추천현황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인재 선발시험 추천 현황표

1. 학교명 : ○○대학교

2. 지원자 및 추천대상자 수

직렬(직류)	교육행정(교육행정)
지원자수	
추천자수	

3. 전체 추천대상자 목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공학과 (정원)	외국어 자격	자격증	학과성적		이수학점			졸업 (예정)일
					졸업 (예정) 석차	석차 비율	이수 학점	졸업 학점	이수 비율	

4. 추천심사회 심사일: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응시자의 지원동기, 성격의 장단점, 입사 후 포부 등을 중심으로 A4용지 2장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글자크기 13포인트) * 작성하실 때 아래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작성 시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작 성 자 :

(서명)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작 성 자 : (서명)